

보도시점 2026. 5. 28.(목) 11:00  
5. 29.(금) 조간

배포 2026. 5. 28.(목) 09:00

## 농관원, 봄 행락철 염소·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3개소 적발

- 거짓표시 26개 업체 형사입건, 미표시 47개 업체 과태료 13,700천원 부과
- 한국오리협회 협업, 명예감시원 287명과 합동단속 등 민간 감시 강화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김철, 이하 ‘농관원’)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73개소\*를 적발하였다.

\* 위반업체(73개소) : 염소고기 17개소(거짓 12, 미표시 5), 오리고기 56개소(거짓 14, 미표시 42)

염소·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, 뷔페, 전통시장, 온·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7천 개소를 대상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.

적발된 업체 중 호주·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,700천원을 부과하였다.

\* 원산지 거짓표시: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

\*\* 원산지 미표시: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,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,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.

농관원 김철 원장은 “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·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 “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고, 다가오는 7~8월 휴가철에도 염소·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.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

2.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

담당 부서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홍진 (054-429-41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교 (054-429-4156)



## 붙임 1

## 염소고기·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

### □ 염소고기

(서울특별시 소재) 음식점에서 몽골, 호주산 염소고기를 염소탕 등으로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

(위반물량 80kg / 위반금액 1,002천원) → 형사입건

(경기도 소재)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·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, 호주산으로 혼동우려표시하여 판매

(위반물량 57kg / 위반금액 1,704천원) → 형사입건

(강원도 소재)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로 만들어진 가공품을 사용해 흑염소탕으로 조리·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→ 과태료 30만원

### □ 오리고기

(경상북도 소재)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

(위반물량 89kg / 위반금액 1,008천원) → 형사입건

(전라북도 소재)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→ 과태료 30만원

## 붙임 2

## 염소고기 ·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장면

※ (주의) 위반업체와 관계없는 사진이므로 개인정보, 상호 노출 주의 부탁드립니다.



☞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염소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는 사진



☞ 염소고기를 사용하여 염소탕으로 조리하는 사진